

건설기계(타워크레인) 등록·검사증

발급번호:

최초등록일:

제작년도:

등록사항	건설기계의 표시			
	건설기계명		등록번호	
	형식		규격	
	원동기형식		차대일련번호	
	사용본거지			
	소유자의 표시			
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주소				

위 건설기계(타워크레인)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
직인

- ※ 1.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,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의 주소를 말합니다.
 2.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, 주민(법인)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1. 주요제원

형식승인번호:

최대정격하중 ton

설치형식

전동기	형식	
	출력	kW
	전압	V
	전류	A

2. 저당권등록사실

구분(설정 또는 말소) 일자

*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작업장치

선회속도	rev/min	
뚝(지브)형식		
훅 상승속도	m/min	
지브(뚝) 최대각도		
지브길이	메인	m
	카운트	m
마스트	규격	가로 m× 세로 m× 높이 m
	기본	단수 m
최대설치높이	m	
카운트 웨이트중량	ton ×	개
최소작업반경	m	
최대작업반경	m	
기타		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)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**건설기계(타워크레인)
등록·검사증**

시 · 도 지 사

4. 건설기계검사란
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신규등록일: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*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				
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

4-2. 건설기계검사란
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* 그 밖의 건설기계 검사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